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221억 6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 236억 4천만원
- 실제수납액 : 233억 9천 1백만원
- 결 손 처 분 : 0백만원
- 미 수 납 액 : 2억 4천 9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억 4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8.9%(전년도 99.5%)임.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2,164	23,640	23,391	249	98.9%
세외수입	8,774	10,269	10,021	249	97.6%
경상적세외수입	3,164	3,190	3,172	18	99.4%
재산임대수입	48	31	31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48	31	31	0	100.0%
사용료수입	0	0	0	0	93.6%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입장료수입	210	186	186	0	100.0%
	기타사용료	6	95	77	18	81.2%
	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기타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이자수입	0	16	16	0	98.6%
	기타이자수입	0	16	16	0	98.6%
	임시적세외수입	5,610	7,079	6,849	230	96.7%
	기타수입	0	0	0	0	98.9%
	시·도비반환금수입	721	1,322	1,294	28	97.9%
	기부금	20	0	0	0	-
	그외수입	4,651	5,505	5,461	44	99.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특별교부세	50	50	50	0	100.0%
	보조금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	1,519	1,519	1,519	0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50	4,150	4,150	0	100.0%
	기금	7,638	7,618	7,618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33	33	0	100.0%
	보전수입등	32	33	33	0	100.0%
	전년도이월금	32	33	33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	33	33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3조 7,243억 3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116억 7천 6백만원
- 예산현액 : 3조 7,360억 1천 3백만원
- 지출액 : 3억 7,202억 2천 9백만원
- 이월액 : 28억 4천 2백만원
- 불용액 : 129억 4천 2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3%(전년도 0.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지출잔액 89억 8백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천 5백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7천 1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천 7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3,736,013	3,720,229	2,842	12,942	0.3%
사업예산계	3,735,586	3,719,876	2,842	12,868	0.3%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3,482,169	3,481,616	121	432	0.0%
학교교육 지원	62,746	62,235	121	391	0.6%
교육지원 행정운영	149	140	-	9	5.9%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50	46	-	4	9.0%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 개선 지원(교육청 협력 사업)	2,230	2,230	-	0	0.0%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886	1,582	121	184	9.7%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150	147	-	3	1.9%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10,000	10,000	-	-	0.0%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3,643	3,643	-	0	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11,090	11,070	-	20	0.2%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28,604	28,439	-	165	0.6%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	192	189	-	3	1.7%
	독서학습지도 멘토링 운영	287	286	-	1	0.2%
	서울까치서당 운영	75	75	-	0	0.1%
	잠자는 학교도서관 책 주민손으로 보내기(시민참여)	100	100	-	-	0.0%
	융합인재양성교육센터 운영(시민참여)	150	150	-	-	0.0%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꿈꾸는 '지역자원연계 직업체험의 날'(시민참여)	70	70	-	-	0.0%
	찾아기는 청소년 성인식 개선 문화공연(시민참여)	20	20	-	-	0.0%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지원	3,000	2,998	-	2	0.1%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800	800	-	-	0.0%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지원	250	250	-	-	0.0%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11,518	11,518	-	-	0.0%
	서울장학사업 추진	11,518	11,518	-	-	0.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3,407,905	3,407,863	-	41	0.0%
	지방세 전출	1,442,112	1,442,112	-	-	0.0%
	담배소비세 전출	281,189	281,189	-	-	0.0%
	지방교육세 전출	1,647,280	1,647,280	-	-	0.0%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9,056	9,056	-	-	0.0%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28,268	28,227	-	41	0.1%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12,673	12,098	-	576	4.5%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11,245	10,714	-	531	4.7%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625	596	-	29	4.6%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54	36	-	17	32.5%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628	621	-	7	1.1%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658	3,192	-	466	12.7%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4,678	4,678	-	-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305	305	-	-	0.0%
	민주시민교육 추진	635	628	-	8	1.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100	99	-	1	0.5%
	서울시 문해교육(학력미인정) 지원	103	100	-	4	3.7%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50	50	-	-	0.0%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학교 만들기(시민참여)	190	190	-	-	0.0%
	교육소의계증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시민참여)	39	39	-	-	0.0%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180	180	-	-	0.0%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지원	1,429	1,384	-	45	3.2%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활성화	384	379	-	5	1.3%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반학생 단체입소 참가비 지원	499	460	-	39	7.8%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546	544	-	1	0.3%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81,531	74,832	2,678	4,021	4.9%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68,055	61,607	2,678	3,771	5.5%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7,904	7,739	-	165	2.1%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357	1,352	-	5	0.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2,598	2,598	-	1	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877	877	-	-	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60	360	-	-	0.0%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1,753	1,752	-	1	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230	2,230	-	-	0.0%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9,301	19,236	-	66	0.3%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3,638	3,635	-	3	0.1%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132	118	-	14	10.3%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634	624	-	10	1.6%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8,044	7,712	123	209	2.6%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107	3,107	-	-	0.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362	362	-	-	0.0%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6,203	5,421	772	9	0.2%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4,082	-	1,098	2,984	73.1%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3,155	3,155	-	-	0.0%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1,355	1,058	-	297	21.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지원(학교폭력예방)	87	87	-	-	0.0%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705	14	685	7	0.9%
	꿈찾고(꿈을 찾아 Go! Go!) 중랑진로직업박람회 개최(시민참여)	30	30	-	-	0.0%
	올바른 인성교육 “열린 예절학교”(시민참여)	10	10	-	-	0.0%
	저소득 밀집지역 청소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문화놀이터 와플”(시민참여)	100	100	-	-	0.0%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감하는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성교육 문화콘텐츠(시민참여)	30	30	-	-	0.0%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913	912	-	1	0.1%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52	51	-	1	1.3%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56	256	-	-	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05	505	-	-	0.0%
	청소년 소셜벤처 직업체험	100	100	-	-	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2,563	12,314	-	249	2.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138	132	-	5	2.3%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61	61	-	-	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6	66	-	-	0.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7,407	7,171	-	236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87	3,381	-	6	0.2%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876	876	-	-	0.0%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376	375	-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19	119	-	-	0.0%
	청소년 인권이야기(시민참여)	100	98	-	2	1.7%
	학교 밖 청소년 공연예술활동 공간 설치 및 시설 개선(시민참여)	35	35	-	-	0.0%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159,212	151,330			0.0%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159,212	151,330	44	7,839	4.9%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36,005	129,579	-	6,426	4.7%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	-	-	-	-
	우수 식재료 지원	3,405	3,179	-	226	6.6%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구성 운영	68	63	-	5	7.1%
	친환경 식생활교육학교 지원	150	150	-	-	0.0%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운영	46	46	-	-	0.0%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50	50	-	-	0.0%
	친환경급식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78	71	-	7	8.6%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	100	95	-	5	5.0%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 프로젝트	150	150	-	-	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1,415	10,655	44	716	6.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지원	5,721	5,636	-	85	1.5%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	1,000	639	-	361	36.1%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024	1,016	-	8	0.6%
일 반 예 산 계		426	353		73	17.1%
기 본 경 비		337	271		66	19.5%
반환금 및 기타		89	82		7	7.8%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인센티브) 용역발주를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으로 3천 3백만원

○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친환경유통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내에서 통계목간 전용으로

2억 5천 1백만원

총 2건, 2억 8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개 사업 총 32억5천8백만원을 이체하였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근로청소년복지관시청사 인건비 부족분 추가확보 및 야간 조명탑 수리 예산확보를 위해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민간위탁금) 사업에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천 5백만원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인센티브) 시상금 예산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 기타보상금) 70백만원

총 2건, 1억 2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사용 관련 변상금 납부를 위하여 총 1건 6억6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6천4백만원 지출하였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8건, 28억 4천 2백만원

○ 명사이월

- 시립청소년시설 실태평가 용역 2018. 12월 계약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명사이월 1억3백만원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2019. 3월 준공에 따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일부 명사이월 7억 7천 2백만원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소위원회 결과('18. 11)에 따른 재검토 등 사업지연에 따라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10억 9천 8백만원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설계용역 '18. 12월 당선작 선정에 따른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비 6억 8천 5백만원
- 총 4개 사업, 26억 5천 7백만원을 명사이월하였음.

○ 사고이월

- 가족체험시설 물품구매용역 최초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유찰 등에 따른 납품기간 지연으로 「폐교를 활용한 가족 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비 1억 2천 1백만원
 - 실태조사 용역비 2018. 12월말 계약완료에 따른 선금금 지급 지연으로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천 1백만원
 - 수발주시스템 사용자교육, 매칭 산지 DB 구축 등 과업수행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18.12월→'19.2월)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 4천 3백만원
- 총 3개 사업 1억 8천 5백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천만원

-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등
16개 사업에

99억 8천만원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 3억 7백만원

총 3개 부처 19개 사업에 105억 1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03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1억 4천 9백만원을 불용시켰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357,015 m^2 6,437억 2천 1백만원
 - 건물 199,800 m^2 2,209억 3천9백만원,
 - 기타(공작물, 유가증권 등) 17건 8,185억 8천 3백만원,
- 총 1조 6,832억 4천 3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개, m^2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 말 보유현황			
	수	면적	가격	증가			감소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합 계	171	574,013	1,726,487	6	973	1,253	6	18,170	44,497	171	556,816	1,683,243	
행정 재산	계	161	573,136	906,904	6	973	1,253	4	17,293	43,112	163	556,816	865,045
	공용재산	70	194,245	289,434	6	639	1,253	0	0	6,043	76	194,914	284,644
	공공용재산	90	362,158	580,423	0	304	0	3	560	22	87	361,902	580,401
	기업용재산	0	0	0	0	0	0	0	0	0	0	0	0
	보존용재산	1	16,733	37,047	0	0	0	1	16,733	37,047	0	0	0
일반재산	10	877	819,583	0	0	0	2	877	1,385	8	0	818,198	

II.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추계 필요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221억6천4백만원) 대비 106.7% 수준인 236억4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3억9천1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률은 105.5%(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나타났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2,164	23,640	23,391	249	98.9%
세외수입	8,774	10,269	10,021	249	97.6%
경상적세외수입	3,164	3,190	3,172	18	99.4%
재산임대수입	48	31	31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48	31	31	0	100.0%
사용료수입	216	281	263	18	93.6%
입장료수입	210	186	186	0	100.0%
기타사용료	6	95	77	18	81.2%
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기타사업수입	2,900	2,862	2,862	0	100.0%
이자수입	0	16	16	0	98.6%
기타이자수입	0	16	16	0	98.6%
임시적세외수입	5,610	7,079	6,849	230	96.7%
기타수입	5,392	6,827	6,755	72	98.9%
시·도비반환금수입	721	1,322	1,294	28	97.9%
기부금	20	0	0	0	-
그외수입	4,651	5,505	5,461	44	99.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지난연도수입	218	252	94	158	37.2%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지방교부세	50	50	50	0	100.0%
특별교부세	50	50	50	0	100.0%
보조금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등	13,307	13,287	13,287	0	100.0%
국고보조금	1,519	1,519	1,519	0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50	4,150	4,150	0	100.0%
기금	7,638	7,618	7,618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	33	33	0	100.0%
보전수입등	32	33	33	0	100.0%
전년도이월금	32	33	33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	33	33	0	100.0%

○ 평생교육국은 과년도 평균세입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 현액 대비 과소징수한 항목과 과다징수한 항목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별 과다·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과다·과소 세입항목 비교 〉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8 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예산 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과 소	공유재산임대료	48	31	64.6%	45	5	11.1%	41	45	109.8%
	입장료수입	210	186	88.6%	223	162	72.6%	151	111	73.5%
	기부금	20	0	0.0%	0	10	순증	-	-	-
과 다	기타사용료	6	77	1283.3%	2	21	1050.0%	2	3	150.0%
	기타이자수입	0	16	순증	0	45	순증	0	46	순증
	시도비반환금수입	721	1,294	179.5%	485	1,489	307.0%	491	2,155	438.9%
	그외수입	4,651	5,461	117.4%	3,439	6,025	175.2%	2,037	3,920	192.4%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징수결정액(236억4천만원) 대비 수납률은 98.9%로 미수납액은 2억 4천 9백만원임.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

(단위:백만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18	23,640	23,391	249	98.9%
2017	22,095	21,978	117	99.5%
2016	19,329	19,155	174	99.1%

- ‘기타 사용료’,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은 매년 일정 비율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징수결정한 세입이 적기에 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과다 미수납 반복 세입항목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18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공유재산임대료	31	0	0.0%	29	24	82.8%	45	0	0.0%
기타사용료	95	18	18.9%	49	28	57.1%	5	2	40.0%
시·도비반환금수입	1,322	28	2.1%	1,528	39	2.6%	2,282	126	5.5%
그외수입	5,505	44	0.8%	6,052	25	0.4%	3,966	46	1.2%

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정확한 운용 필요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서울청소년수련관 내 사무실을 임대한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에 부과한 것으로, 세입예산을 4천 8백만원을 편성했으나 3천 1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했으며, 예산 대비 과소 세입조치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해야 할 세입을 ‘기타사용료’로 잘 못 부과한 것에 따른 것임.
-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시에 부과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8년 12월에 부과 후 출납폐쇄일 이후에 징수하게 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에 포함되지 못하고, 세입항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에도 (사)한국청소년육성회의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시기 및 납부시기의 조정 등으로 부과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도록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수탁기관들의 전용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의 개요〉

시 설 명	위탁시설 개요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 시설규모 : 부지985.1㎡, 건물6,911㎡ (지하 1층, 지상 8층) - 위탁기간 : 2년 (2018.7.1.~2020.6.30.) - 총 수탁기간 : 28년(1992.7.01.~현재) - 2018년 예산 : 32억2천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은평 학습장 대관료(5백50만원) 징수와 관련된 세입 예산이었으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중 일부(2019년 상반기 사용료)를 포함하여 9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의 운영의 사무위임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운영을 금천구에 사무위임(2018.12)하여 사용료를 시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 그 후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으로 사용료를 30% 인하하여 당초 세입액 2억7천8백만원에서 1억8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사무위임 내용

- 운영단체 : 금천구청(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위임 운영('18.3월)
- 사용료(2시간 기준, 부가가치세 10%별도)

구 분	축 구 장	풋 살 장
평 일	주간 60,000원 / 야간 78,000원	35,000원
주 말	주간 78,000원 / 야간 101,400원	45,500원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의 세입과목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징수 결정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은 2억7천8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민원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계획에 없던 금천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상반기분(7천6백만원)만을 세입처리하였는바,

* 세입규모 축소의 사유 : 축구장 사용료가 과다하여, 사용료 인하 민원으로 사용료 조정

** 시립청소년복지관 운동장(축구장) 관리 위임 협약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사용료 변경내역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편성액	수납액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그 외 수입	278,000	76,000
세입결산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사용료	185,000	

평생교육국은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 과목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사용료 조정 등 세입 감소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재정 운용상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바, 향후 즉흥적인 사업 변경(사무위임, 사용료인하, 정산시기 조정)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회계법」 등 결산관련 법령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 집행과목을 경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입관리 및 결산 처리에 있어 해당 결산 절차를 무시 또는 방임하였다고 할 것임.

향후, 평생교육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세입관리 및 결산보고를 위해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처리 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세입징수 관리사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합리적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 필요

- 평생교육국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1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 및 편성하여, 70억 7천 9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26.2%)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68억 4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22.1%)을 수납하고, 2억 3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임시적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비율
			수납총액	세입금 환급	실제 수납액		
임시적세외수입	5,610,380	7,079,366	6,849,237	247	6,848,990	230,375	122.1%

예산과목	예산현액	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정수비율
			수납총액	세입금 환급	실제 수납액		
기타수입	5,392,380	6,827,001	6,755,278	247	6,755,031	71,970	125.3%
시·도비반환금수입	721,074	1,322,173	1,294,099	0	1,294,099	28,074	179.5%
기부금	20,000	0	0	0	0	0	0.0%
그외수입	4,651,306	5,504,828	5,461,179	247	5,460,933	43,896	117.4%
지난연도수입	218,000	252,364	93,959	0	93,959	158,405	43.1%
지난연도수입	218,000	252,364	93,959	0	93,959	158,405	43.1%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직전 회계연도에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당초 예산(7억2천1백만원) 대비 179.5%(12억9천4백만원) 증액한 규모로 세입처리하였음.

예산현액 대비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3억6백만원)”, “까치서당” 및 “주민참여예산”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2천만원), “우수식재료 지원사업(3억8천3백만원)” 등은 초과 수납되었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보조금’은 1억 3천 7백만원이 과소 수납되었는바, 시·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매년 일정금액 이상 수납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세입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편성하고, 과도한 규모로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추계 시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적정세입 편성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시·도비 반환금 세입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액대비수납비율
2018	721	1,322	1,294	179.4%
2017	485	1,528	1,489	307.0%
2016	491	2,282	2,155	438.9%
2015	1,224	866	858	70.1%
2014	1,267	2,194	1,830	144.4%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다른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직접사업(학교보안관, 스쿨버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화장실개선, 양치대설치, 우수식재료 지원 등), 민간위탁 사업(청소년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의 보조금·사업비 등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46억 5천만원을 추계 및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117.4%인 54억 6천만원을 세입처리하였음.

○ ‘그외수입’의 대부분이 사업비·보조금 등의 사업 후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부실한 세입추계 및 전례답습적 사업계획 등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의 여건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그외수입’ 중 세입금 환급은 2016년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 퇴직금 적립 후 잔액일 반납했어야 하나, 퇴직금 미적립 상태에서 환급하여 환수금액 24만6천원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 평생교육국은 총 3조 7,360억 1천 3백만원의 세출예산 중 3억 7,202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용 2건(2억 8천 4백만원), 이체 1건(32억 5천 8백만원), 변경사용 2건(1억 2천 5백만원), 예비비 사용 1건(6억 6천 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 8건(28억 4천 2백만원)이 있었으며, 예산현액(3조7,360억1,300만원) 대비 불용률은 0.3%(129억4,200만원) 수준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 기준 부서별 집행내역 〉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금액	예산비중				
평생교육국	3,736,013	100.0%	3,720,230	2,843	12,942	0.35%
교육정책과	3,482,369	93.2%	3,481,754	121	495	0.01%
평생교육과	12,718	0.3%	12,142		576	4.53%
청소년정책과	81,677	2.2%	74,966	2,679	4,033	4.94%
친환경급식과	159,252	4.3%	151,369	44	7,840	4.92%

가. 예산의 전용

- 평생교육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2억 8천 4백만원으로, 전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감액	증액	전용일			
시립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914,285	△33,427		2018.9.21	18,810,858	18,764,751	46,107 (0.2%)
	사무관리비	60,000		33,427		93,427	91,319	2,108 (2.3%)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감액	증액	전용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940,499	△251,000		2018.10.12.	4,689,499	4,125,616	563,883 (12.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251,000		251,000	251,000	- (0.0%)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청소년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비(1억3백만원)’ 중 청소년시설 평가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3천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당초 청소년시설 평가를 위한 용역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주먹구구식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정확한 소요예산 산정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안전성관리비·배송비·차액지원비 등을 위해 편성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49억4천만원)’에서 신규참여 자치구에 서울시가 공공급식센터를 마련해 주고자, 친환경유통센터(강서1센터)의 일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전용하였음.
- 평생교육국은 사업추진 전 사업의 필수요소인 공공급식센터의 부지 확보 가능성,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여,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공급식센터 부지마련도 어려운 자치구를 참여하도록 하고 센터건립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불용처리하여, 학교급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간을 공공급식을 위한 공간 재조성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센터 건립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각 자치구당 10억원, 총 50억원(2018년도)

- 또한, 본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지연,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원칙의 예외적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세출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예산의 변경사용

- 평생교육국은 총 2건에 1억 2천 5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1) 변경사용 후 과다불용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민간위탁금’에서 근로청소년복지관 위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추가확보 및 야간 조명탑 수리 예산확보를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비 지원” 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천5백만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음.

〈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를 위한 변경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청소년친화도시 서울조성	민간위탁금	1,300,000	△55,000		2018.8.17	1,245,000	949,000	296,000	23.8%
시립청소년특화 시설위탁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000		55,000		155,000	155,000	-	0.0%

- 본 변경사용은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운동장(축구장 및 풋살장) 운영을 금천구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 인원의 인건비와 야간 대관을 위한 조명을 수리하기 위하여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은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참여·자치 등의 네트워크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 예산(4억8천만원) 대비 293.8% 수준인 14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2019년에도 2018년도 예산 대비 197.2% 수준인 27억 8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예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9예산	증감율	2018예산	증감율	2017예산
계	2,781,000	197.2%	1,410,000	293.8%	480,000
사무관리비	25,000	250.0%	10,000	△33.3%	30,000
민간위탁금	1,556,000	119.7%	1,300,000	371.4%	3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	1000.0%	100,000	100.0%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	-	-	-

- 특히,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전년(3억 5천만원) 대비 371.4% 수준인 13억원으로 증액·편성하여, 타 사업으로 7천만원을 변경하였음에도 민간위탁금의 22.8%(2억9천6백만원)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청소년인생성장 지원 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적정성 및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

(단위:천원)

과목구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사무관리비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30,000천원	청소년희망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10,000천원
민간위탁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00천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50,000천원	마을속 청소년 코디네이터 활동 750,000천원 청소년인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50,000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500,0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청소년포럼 지원 100,000천원	서울형 청소년 아지트 조성 100,000천원

-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구체적 목적도 없이, 예산 규모의 증액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의 과도한 증액 이전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잘못 편성한 예산항목의 정정을 위한 변경사용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의 시상금(5천5백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사용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880,858	△70,000		2018.9.21	18,810,858	18,764,751	46,107	0.2%
	기타보상금	0		70,000		70,000	70,000	-	0.0%

- 예산의 집행목적에 고려할 경우 당초 ‘민간위탁금’이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었으나, 예산항목 편성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변경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예산의 변경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보다 철저한 사업검토 및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기타보상금’은 서울시의 평가결과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로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법령·조례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한 종합 평가’에서 우수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기타보상금’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없이 추진되어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예산의 변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300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략)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한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전문성) 또는 비용절감(예산의 효율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4년 평균 16.5%만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보다는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지원 현황 〉

(단위:천원)

		총계	지원형	자립형
소계	4년간 총 운영비	76,478,000	19,084,000	57,394,000
	4년간 지원액	12,355,000	5,165,000	7,190,000
	평균 지원비율	16.2%	27.1%	12.5%
2019	총 운영비	80,515,000	18,764,000	61,751,000
	서울시 지원액	13,409,000	5,770,000	7,639,000
	지원비율	18.8%	30.8%	12.4%
2018	총 운영비	78,898,000	19,790,000	59,108,000
	서울시 지원액	14,005,000	5,943,000	8,062,000
	지원비율	17.8%	30.0%	13.6%
2017	총 운영비	76,478,000	19,084,000	57,394,000
	서울시 지원액	12,355,000	5,165,000	7,190,000
	지원비율	16.2%	27.1%	12.5%
2016	총 운영비	75,143,000	19,755,000	55,388,000
	서울시 지원액	11,640,000	4,950,000	6,690,000
	지원비율	15.5%	25.1%	12.1%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26억 5천 7백만원) 4개 사업과 사고이월(1억 8천 5백만원) 3개 사업으로, 총 7건에 28억 4천 2백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음.

1) 사업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립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26억 5천 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2018 (계)		11,883,025	7,721,213	6,146,243	2,657,105	3,059,08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909,364	836,536	713,259	102,689	72,828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5,478,336	5,472,845	4,823,501	647,567	7,267
	감리비	720,000	720,000	595,651	124,349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0,325	-	-	1,098,000	2,972,325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무관리비	5,000	60	60	4,500	440
	시설비	700,000	691,772	13,772	680,000	6,228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시설비’는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의 선금금(총금액의 20%)을 제외한 1억3백만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의 ‘사무관리비(450만원)’와 ‘시설비(6억8천만원)’는 설계용역 계약금(2천만원)을 제외한 6억 8천4백만원을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 본 사업은 노후시설 실태평가를 통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2018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에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사업지연
-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 2018년 설계공모 후 동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설계비 전액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사업지연
-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6억4천8백만원) 및 감리비(1억2천4백만원)는 2019년 3월 준공으로 건축공사비 7억7천2백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함.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이나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최근 5년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중 ‘시설비’의 이월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립청소년시설기능보강	시설비	1,955,900	1,798,231	-	696,003	123,277

- 또한, 평생교육국은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을 2018년 12월까지 종료해야하나, 10월에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1일에 수의계약 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지연의 이유가 불성실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노후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의 추진경과 〉

- 2018.10.02. 노후기간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10.1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적정)
- 2018.11.12. 용역발주 의뢰
- 2018.11.27. 1차 입찰공고 결과(유찰:1개업체 참여)
- 2018.12.04. 2차 입찰공고 결과(유찰:1개업체 참여)

- 한편, 두 번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적정단가를 반영하여 용역비를 산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면밀한 사업설계 및 적정예산 편성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¹⁾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2018년 1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에 착수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12월에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사업은 모두 사업지연 이유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세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기반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업지연 원인분석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사고이월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사고이월은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 체험시설 조성 운영”의 ‘사무관리비’ 1억 2천 1백만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 2천 1백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 4천 3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8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1) 양천구 신정동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음악창작센터 건립·운영 기본계획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2018 (계)		1,763,961	1,657,365	1,369,852	184,824	106,596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90,600	365,932	245,196	120,736	24,66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909,364	836,536	713,259	20,588	72,82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463,997	454,897	411,397	43,500	9,100

- 사고이월 처리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무관리비’는 노후한 텐트 등(텐트, 가림막(타프, tarp), 매트리스 3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텐트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비품임에도 불구하고, 연중 설치상태를 유지하여 노후화를 앞당기고 있어, 비품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텐트 등 구입비 편성현황〉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소계	205,000	204,000	220,000	234,800
캠핑장 소요물품구입	133,000	141,000	160,000	170,000
텐트구입비	72,000	63,000	60,000	64,800

- 또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무관리비’의 지출원인행위(계약, 계약일:2019.1.25.)는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본 사고 이월은 관련 법령에 의할 경우 사고이월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결산상 법령위반 사항이므로, 사고이월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결산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다음연도(2019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항임.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2천1백만원)’는 명시이월된 용역(노후 기반시설물 실태평가 용역)의 선급금으로, 연말계약(2018.12.28.)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이에 더해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평생교육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전산개발비’는 사업 및 용역의 지연(준공기한 연기)으로 4천3백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바, ‘전산개발비’는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2억8천만원) 처리하고, 2018회계연도에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을 재차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주기적인 사업실적 점검 및 예산 관리와 함께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450,000	403,960	123,064	280,896	46,04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1,000,000	874,994	254,729	652,765	92,506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재산관리비용	150,000	83,267	76,000	7,267	66,733

3) 지속적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 평생교육국은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이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명시·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서울시 재정에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업은 사업기간 조정, 예산조정 등 사업개선을 통해 잔여재원을 보다 긴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소요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후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한 사업 :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의 시설비

※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후 2018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사업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시설비,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의 시설비와 감리비,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전산개발비

〈 사고이월 후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18년 본예산	2017년 사고이월액	2018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시설비	662,560	4,815,776	5,478,336	4,823,502	647,567		7,268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감리비	233,000	487,000	720,000	595,651	124,35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13,361	696,003	909,364	713,260	102,689	20,588	72,828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276,600	114,000	390,600	245,196		120,736	24,669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183,100	280,897	463,997	411,397		43,500	9,100

4)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

-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개 사업에 110억 1천 2백만원이며, 이 중 76억 5천 4백만원(69.5%)을 지출하여 30.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이월사업비에서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음.

〈 평생교육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지출액	집행률
		3,237,621	11,012,429	14,250,050	8,667,507	7,654,404	69.5%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 연체협시설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276,600	114,000	390,600	245,196	114,000	100%
	시설비	571,000	272,187	843,187	793,991	266,528	97.9%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시설비	-	431,171	431,171	423,108	423,108	98.1%
	감리비	-	18,040	18,040	18,040	18,040	100%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	253,000	253,000	103,800	103800	41.0%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213,361	696,003	909,364	713,260	680,760	97.8%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시설비	662,560	4,815,776	5,478,336	4,823,502	4,808,509	99.8%
	감리비	233,000	487,000	720,000	595,651	487,000	100%
시립종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	12,000	12,000	-	-	0.0%
	시설비	1,098,000	2,972,325	4,070,325	-	-	0.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전산개발비	183,100	280,897	463,997	411,397	280,897	100%
	시설비	-	652,766	652,766	532,299	532,299	81.6%
	자산및물품취득비	-	7,267	7,267	7,267	7,267	100%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의 이월액(2017회계연도→2018회계연도)은 총 2억 5천만원으로 지구단위 수립용역(1억 3백만원)과 시립청소년음악 창작센터 설계 공모비(1억 5천만원)를 위해 이월하였으나, 41.0%(불용률 59.0%)의 낮은 집행률(2018회계연도 집행)을 보이고 있는바, 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은 ‘시설비’를 ‘관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비’의 관례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와 공사기일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 중 이월액의 집행내역” 〉

(단위:천원)

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소 계	253,000	103,800	149,200	59.0%	-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03,000	36,000	67,000	65.0%	용역 타절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50,000	67,800	82,200	54.8%	집행잔액

라. 예산 불용

- 평생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3%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율(2.1%)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 예산현액(3조7,360억)은 법정전출금(3조 3천 796억원), 조례상전출금(218억원), 일반사업비(3천 281억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 〉

(단위:천원)

총계	법정전출금	조례상전출금	일반사업비
3,736,012,556	3,379,636,415	28,268,189	328,107,952

법정전출금 및 조례상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사업비의 불용률은 3.9%로, 서울시의 일반회계 불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일반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소계	328,107,952	312,365,728	12,900,296	3.9%
교육정책과	74,463,408	73,889,855	452,817	0.6%
평생교육과	12,717,446	12,141,516	575,930	4.5%
청소년정책과	81,676,021	74,965,995	4,032,334	4.9%
친환경급식과	159,251,079	151,368,364	7,839,216	4.9%

〈 2018년 법정전출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액	전출액	잔액	전출률
계	33,796	33,796	-	100.0%
지방세	14,421	14,421	-	100.0%
담배소비세	2,812	2,812	-	100.0%
지방교육세	16,473	16,473	-	100.0%
학교용지매입비	90	90	-	100.0%

〈 최근 5년간 조례상 전출금 현황 〉

(단위:천원)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지원액	2,090	283	567	417	405	418
산출기초	-	지방세의 0.2%	지방세의 0.5%	지방세의 0.4%	지방세의 0.4%	지방세의 0.4%

1) 과도한 불용 처리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예산액의 20% 이상 불용사업은 총 21개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1억원 이상, 20%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191,310,818	177,974,512	12,236,315	6.4%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무관리비	12,000	0	12,000	100%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4,070,325	0	2,972,325	73.0%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6,400	1,919	4,482	70.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666	1,802	3,865	68.2%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253,000	103,800	149,200	59.0%
기본경비	국내여비	109,200	47,546	61,655	56.5%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차치단체경상보조금	285,669	144,930	140,739	49.3%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4,440	2,300	2,140	48.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3,300	25,910	17,391	40.2%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	차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	639,082	360,919	36.1%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민간위탁금	1,245,000	949,000	296,000	23.8%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90,000	69,922	20,079	22.3%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차치단체경상보조금	41,500	32,900	8,600	20.7%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6,182	434,031	102,152	19.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652,766	532,299	120,467	18.5%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금	3,199,880	2,742,319	457,561	14.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차치단체경상보조금	4,689,499	4,125,616	563,883	12.0%
우수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405,034	3,179,125	225,910	6.6%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35,978,150	129,555,816	6,422,334	4.7%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7,129,800	6,993,479	134,321	1.9%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553,007	28,392,716	160,292	0.6%

※ 불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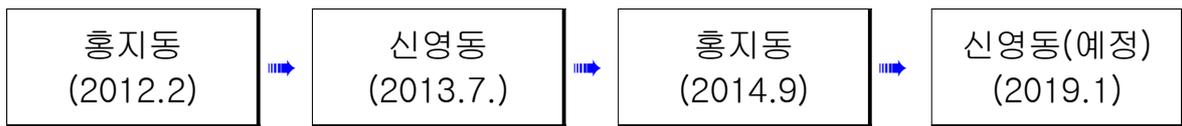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사무관리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부지선정 재검토(이월예산 불용)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완 결정에 따른 부지선정 재검토(이월예산 불용)
-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무관리비)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당초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2회 개최
- 기본경비(공공운영비) : 차량 교체로 운영비(유류비, 수리비등) 감소
-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시설비) : 근로청소년복지관 지구단위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불용액 발생
- 기본경비(국내여비) : 서울시 예산편성기준(1인당 1백 4십만원 /1인당 관내 60회 (120만원), 관외 20만원)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출장횟수 저조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은평쉼터 개소지연에 따른 불용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시설부대비) :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성과공유대회) 및 워크숍을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절감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시작 시 기지연으로 학교참여율이 저조(50%), 급식일수 축소(188일→109일)로 불용액 발생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민간위탁금) :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 하반기 시행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무관리비) : 사업홍보 등 교육청 공동추진으로 예산 절감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액 감액지급으로 실수령액 대비 집행잔액 0원
-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신규조성 지연으로 관리인력 인건비 감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시설비) : 공공급식센터 진입로 확장 허가 등의 문제로 공사 일부가 미집행되어 예산 불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하반기 예정된 자치구센터의 개소지연으로 운영비 예산 일부 미집행
- 우수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수능 및 현장학습 등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일수 조정으로 잔액 발생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일부학교 급식일 감소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집행잔액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반영, 신규 민간위

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학장 공석, 국장(8월 채용), 휴직자, 연장근로수당(월20시간 한도), 휴일근로수당 사유 미발생 등

-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휴교(4개교)에 의한 예산 일부 반납,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공적연금 대상자 및 60세 이상자) 채용에 따른 미집행 등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련관이 없는 종로구에 시립수련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종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최초 홍지동에 건립계획 중 토지활용도 문제로 중단하고 신영동 부지로 옮겨 검토하였으나, 시와 구의 저류조 토지매입비 문제, 부지 소유권의 문제 미해결로 2014년 다시 홍지동으로 검토하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에 따라 이월예산(29억8천4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또 다시 신영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부지 변경 현황 〉



- 종로수련관건립 사업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는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적정한 대체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절차 없이 과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부지로 회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3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했던 평생교육국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대규모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안이 사소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건립사업의 잦은 사업변경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유 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숙고 및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민주시민교육 추진(사무관리비, 불용률 70%)”,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불용률 68.2%)’와 ‘국내여비(불용률 56.5%)’,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시민참여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률 36.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무관리비, 불용률 22.3%)” 등 4개 사업과 대규모 예산액을 불용 처리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64억2천2백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5억6천3백만원)”, “자유시민대학 운영(민간위탁금, 불용액 4억5천7백만원)”, “우수 식재료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2억2천5백만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불용액 1억6천만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1억3천4백만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액 1억2천만원)” 등 7개 사업은 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예산 추계 시 반영하지 않고,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편성예산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매년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규모의 축소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요도와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의 감액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추가경정예산(감액) 후 불용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입 재원을 최단기간 내에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우선순위 사업에 편성 및 집행함으로써 재정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 편성한 94억 4천만원에서 추가 경정예산으로 45억원을 감액한 후 예산을 타사업으로 전용(감액, 2억5천만원)하였음에도, 예산 중 41억 2천 5백만원만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12.0% 규모인 5억 6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추가경정예산(감액) 후 불용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본예산	추경예산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440,499	△4,500,000	4,940,499	4,689,499	4,125,616	563,883	12.0%

- 이는 신규 참여 자치구의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순히 신규참여 자치구 수를 기반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모두를 편성한 결과로,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지양하고, 사업 우선순위, 자치구의 여건과 사업추진 절차를 검토하여 실 소요액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감추경 및 과다불용이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반복되고 있는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시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편의에 따라 변형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사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과다편성은 긴급한 다른 사업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회계연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78,478	△2,000,000	2,278,478	1,325,000	953,478

3) 사고이월 후 불용

-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시설비를 사고이월시켜 집행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하였음.

〈 사고이월 후 불용처리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본예산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 률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시설비	0	103,000	103,000	36,000	67,000	65.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0	652,765	652,765	532,299	120,467	18.5%

※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사업의 불용 검토는 35p 참조

- 시민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를 통해 특정한 행정효과를 기대하나, 사고이월로 행정효과가 지연되고, 불용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는바, 평생교육국은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정 이후 사고이월 또는 이월처리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예산 이체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체는 총 1건(32억 5천 8백만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8.11.1.)에 따라 조직개편한 사항임.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이체 현황 〉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부서명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3,257,972	3,257,97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091,213	3,091,213		2018.11.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091,21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노인·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6,759	166,759		2018.11.7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6,759	

○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나, 청소년(9세~24세)과 아동(18세 미만)의 범위는 대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같은 대상을 두고 여러 실·국 및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바,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할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 내용 〉

2018.10.31. 개정 전 규칙	현행(2018.11.1. 개정 후 규칙)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⑧(생략)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분장사항 없음.)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⑧ 아이돌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7. 학교,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계 지역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돌봄 협력사업 운영</u> <u>8. 기타 방과 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u>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 분장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사용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총 3개 부처, 19개 사업에 105억 1천 7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03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4.5%(1억4천6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국고보조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천만원
-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등 16개 사업에 99억 8천만원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사업”에 3억 7백만원

〈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13,287,104	12,039,977	1,247,128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180,0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민간위탁금	191,250	191,25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9,160	1,107,600	1,56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7,900	187,900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000	180,0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443,790	443,79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73,965	73,965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965	73,965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115,238	1,115,238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42,500	42,500	-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900	32,900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민간위탁금	230,076	229,698	378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340	164,340	-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1,380,000	1,378,000	2,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164,975	164,975	-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88,325	1,388,325	-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1,098,000	-	1,098,00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672,000	1,672,0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학교폭력예방)	민간위탁금	87,471	87,471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500	28,500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600	105,600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160,000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	-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4,000	2,000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	30,000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민간위탁금	5,000	5,000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	7,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22,000	22,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000	22,00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1,833,340	1,833,34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4,940	144,940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5,669	144,930	140,739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4,000	404,000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7,200	304,750	2,451

○ 국고보조금을 불용처리한 사업은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불용액 10억9천8백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56만원)”,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억4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민간위탁금, 불용액 378천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 사업보조, 불용액 2백만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민간위탁사업비, 불용액 2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불용액 245만원)” 등 총 7개 사업이며,

이중 1억4천만원을 불용한 “기출청소년 보호·지원”은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은평청소년쉼터 사업의 개소지연(2019.5. 개소예정)으로 불용처리(은평구)하여 평생교육국은 이를 반납할 예정에 있음.

-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중앙관서 장(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칠 경우에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시립종로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의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10억9천8백만원)’을 수령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여성가족부의 장관 승인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음.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요구할 시 본 사업의 추진은 안정성이 저하되고, 반환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집행의 합법성이 결여되는 바, 평생교육국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철처한 규정준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
------	-----	-------	-----